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46호 2020. 8. 2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69호)

공 고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07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0.

예 천 군 수

1.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접도구역 해제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27호선	노선명	구미~단양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해제구간				
	시점		종점	연장(m)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317-2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79-4	1,260m	
접도구역 해제사유	지방도 927호선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 폐도구간 및 군도 이하 접도구역의 지정 의무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3. 지형도면 고시도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7)에서 공람 가능함.(관계도서 게재 생략)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추가 신설 (안 제5조)

-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gmlwhd2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054-650-6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천군 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 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 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 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